

7급

2024년

전국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안내자료



인사혁신처

본 안내자료는 업무담당자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자료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매뉴얼」 및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시험령」, 「통합인사지침」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관련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Contents

04	I. 제도 개요
05	II.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일정(2024년)
06	III. 추천 요건
13	IV. 시험단계 및 합격자 발표
15	V. 자주 물어보는 질문
참고	
20	1. 2024년 제도 변경사항
20	2. 채용제도 비교(전국 지역인재- 공채시험)
21	3. 직렬별 가산 자격증
26	4. 2024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기출문제



I 제도 개요

- 전국 광역시·도의 우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여 공직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공직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별도의 취업 준비 없이 대학의 교과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지방대학 출신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선발 절차



○ 수습 근무

- 수습이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포함)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1년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통합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7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2024년 기준 월봉급액 272만원)를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수습근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7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보수(2024년 기준)

구분	연보수	월평균보수	월봉급액	직급보조비 (월)	정액급식비 (월)	명절휴가비 (월평균)	정근수당 가산금(월)	초과근무수당 (월정액분)
7급 (1호봉)	3,266만원	272만원	205만원	18만원	14만원	21만원	3만원	12만원

○ 시험 안내

- 매년 12월('24년 1월) 선발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선발규모 및 경쟁률

(단위: 명, 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선발인원	80	90	100	105	110	120	130	140	145	160	165	185	175
추천인원	367	491	474	629	702	608	498	511	481	640	681	495	526
경쟁률	4.6:1	5.5:1	4.7:1	5.9:1	6.4:1	5.1:1	3.8:1	3.7:1	3.3:1	4.0:1	4.1:1	2.7:1	3.0:1



II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일정(2024년)

○ 선발예정인원 : 총 175명

직군	직렬	직류	선발인원	임용예정부처 (예시)
행정 (108명)			108명	전 중앙행정기관
	공업	일반기계	9명	우정사업본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전기	7명	산업통상자원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화학		4명	중소벤처기업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 (67명)	시설	일반토목	18명	국토교통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건축	2명	국방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방재안전	방재안전	3명	행정안전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방송통신	전송기술	8명	방송통신위원회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농업	일반농업	1명	농림축산식품부
	환경	일반환경	2명	특허청, 환경부
	보건	보건	2명	보건복지부
	전산	전산개발	9명	행정안전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데이터	2명	국방부, 행정안전부

○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024. 1. 30.(목) 09:00 ~ 2. 2.(금) 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24. 2. 23.(금)	2024. 3. 2.(토)	2024. 3. 22.(금)
서류전형	-	-	2024. 4. 23.(화)
면접시험	2024. 4. 23.(화)	2024. 5. 9.(목) ~ 10.(금)	2024. 5. 24.(금)

※ 자세한 시험 관련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시험공고/공지사항' 참고

III 추천 요건

1 추천 학교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학교
 -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일부와 전공심화과정(학교) 등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문대학 등
 - ※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구 분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일반대학 등	학사학위 과정	전국 지역인재 7급
전문대학 등	학사학위 과정(전공심화과정 등)	전국 지역인재 7급
	전문학사학위 과정	전국 지역인재 9급(과학기술직군)

(2) 추천 지역

- 각 대학의 현재 주소지가 소속된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를 추천지역으로 함
- 사이버 대학은 등록주소지가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를 추천지역으로 함

(3) 분교의 추천방법

-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치한 분교는 독립된 대학으로 보아 본교와 별개로 추천가능하며, 분교 주소지가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를 추천지역으로 함

▶ 자체 추천이 가능한 분교 현황('23.12월 기준)

▷ 한양대(안산), 건국대(충주), 고려대(세종), 동국대(경주), 연세대(원주)

- 그러나 본교의 일부가 단순히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경우(캠퍼스)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분교라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추천권한이 없어 본교에서 일괄적으로 추천해야 함

(4) 방송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재학 중 수강했던 지역대학을 근거지로 하여 지역을 표기해야 함

▶ 방송통신대학교 추천 시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가 2개 이상의 지역대학에서 수강한 경우, 마지막 학기를 수강한 지역에서 추천가능
▷ 방송통신대학의 추천 상한인원은 전체 지역대학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함

2 추천대상 자격요건

추천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되므로 각 학교의 장은 추천 시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구 분	내 용
졸업예정자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추천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인 사람 (▶ 재적 : 휴학, 수료, 졸업유예 포함) ※ 수습시작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졸업자	졸업일이 당해 시험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내인 사람 (2024년 시험기준) 졸업월에 관계없이 2021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2)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관련 학과 계열(2024년)

직군	직렬	직류	선발예정 직렬(직류) 관련 학과 계열
행정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기술	공업	일반기계	공학 계열
		전기	
		항공	
	시설	일반토목	
		건축	
	방재안전	방재안전	
	방송통신	전송기술	
농업	일반농업		
환경	일반환경		
보건	보건	의약 계열	
	전산	전산개발	공학, 자연, 의약 계열
		데이터	

-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학과 계열을 전공하여야 합니다.
 - 전공학과가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에 속할 경우 행정직군으로 추천하며, 공학, 자연, 의약 계열에 속할 경우 과학기술직군 내 관련 직렬(직류)로 추천

유의사항

- ① 계열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9에 따라 작성된 **교육통계 상의 학과(전공)분류 중 대부분류**를 말하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하는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kess.kedi.re.kr 내 알림·서비스-자료집)에서 확인 가능
- ※ 원서접수 시 학과코드(예:U04010100006) 입력, 교육통계 상의 계열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학과명	학과코드
공학계열 04 (계속)	건축 0401 (계속)	건축·설비 공학 040101 (계속)	건축공학·설비공학부	U04010100006
			건축공학전공	U04010100007
			건축도시공학부	U04010100008
			건축도시도록공학계열	004010100009
			건축도시토목환경공학부	U04010100010
			건축에카트로닉스공학과군	U04010100011
			건축설비·기계공학부	004010100012
			건축설비공학과	004010100013
			건축설비공학전공	U04010100014
			건축설비학과	U04010100015
			건축설비학전공	U04010100016
			건축시스템공학부	004010100017
			건축·건설시스템공학부	004010100018
건축·메카트로닉스공학과군	U04010100019			

- ② 다만, 학과(전공)의 대학 자체계열이 교육통계 상의 계열과 다를 경우 대학 자체계열로 추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학 자체계열을 교육통계 상의 계열과 다르게 정한 근거(학칙 등)를 제시하여야 함. 또한 특정학과 전공자를 대학 자체계열을 기준으로 추천할 경우 그 학과 전공자는 대학 자체계열 기준에서만 추천 가능

- ◆ (△△학과) 교육통계 상 공학계열이고, 대학 자체계열은 인문·사회계열인 경우
 - ▷ (원칙) 교육통계 상 계열(공학계열)에 따라 과학기술직군 관련 직류로 추천 가능
 - ▷ (예외) 대학 자체계열(인문·사회계열)에 따라 행정직군으로 추천 가능
 - 단 '△△학과'를 교육통계 상의 공학계열이 아닌 인문·사회계열로 분류한 근거 제시 (서류전형 시 적격여부 판단)
 - ⇒ '△△학과' 학생을 대학자체계열로 추천 시 A학생은 공학계열, B학생은 자체계열로 추천 불가

- 복수전공자는 두 개의 학과 중 조건에 충족하는 학과로 추천할 수 있으나, 부전공을 하는 경우에는 전공학과로 추천
-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계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기능사 이상) 시 해당 직렬(직류)로 추천 가능

유의사항

- ① 자격증은 원서 접수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 ② 공학, 자연, 의학 계열 학과 전공자가 선발예정 직렬(직류) 관련 계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취득(기능사 이상) 시 해당 직류로 추천이 가능하나,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선발예정 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기능사 이상)하더라도 해당 직류로 추천 불가

- ◆ (예시) 공업직렬 '일반기계' 직류
 - ▷ 관련 학과 : 공학계열 학과 추천 가능
 - ▷ 자격증 : 관련 자격증 취득 시 자연, 의학계열 학과 전공자도 추천 가능
 - ※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전공자는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추천 불가
 - ※ 가산 대상 자격증(산업기사 이상)과 달리 기능사 이상 인정

중요 전산 직렬 자격증 필수 요건 폐지(24.1.1.),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 인정(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 참고) 신설

(3) 학과성적

구분	성적
졸업예정자	추천 당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추천 심사일 기준으로 성적요건 판단(추천일 기준 석차 산출 증빙자료 보관에 유의하여, 추후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
졸업자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졸업인원이 29명인 경우 2등까지만 추천 가능

- ※ 학과(전공)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학과의 1등을 추천하거나 동일학부로 범위를 확대하여 합산인원 대비 석차비율에 따라 추천

편입생 및 휴학생 성적산출 방식

- ▷ (편입생) 편입한 학교 성적만 대상으로 함
 - ☞ 졸업예정자의 경우, 편입학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하거나, 전기간을 이수한 경우 추천 가능
- ▷ (휴학생) 휴학 당시의 석차를 기준으로 함
 - ☞ 다만, 전산시스템 상 휴학 당시 석차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추천시점을 기준으로 석차를 산출하여야 하며, 이 때 학교별로 일관된 기준 적용

- 〈 예시 〉
- 예) 2022년 3월에 편입을 하여 2022년~2023년 동안 총 4학기를 이수하여 졸업학점의 3/4이상 취득한 졸업예정자의 경우, 편입학 대학에서 추천 가능
- 예) 2022년 8월에 편입 후 2022년~2023년 동안 총 3학기를 이수한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학점의 3/4이상 취득하더라도 편입학 대학에서 추천 불가

(4)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

- 원서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일까지 아래의 기준점수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단,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됨)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기준점수	530점	71점	700점	340점	65점 (Level 2)	625점

- 기준 점수이상 취득하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학생들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장려

영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제도

-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시 활용되는 어학성적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등록하여 인정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활용토록 지원하는 서비스
- 예) (공무원 시험 응시예정자) '23.3월 TOEIC 응시 후 사전등록 시 '28.12월까지 인정
- ▷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시험공고/공지사항 > '2024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공고문 참조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원서접수일까지 실시된 시험 중 2급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 없음)

(6)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7)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 1개의 직렬(직류)에만 추천될 수 있습니다.

(8)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습니다.

3 추천 가능 인원

※ 학교별 추천 가능 인원 2명 확대(2024.1.1.~)

입학정원	1~500명	501~1,000명	1,001~2,000명	2,001~3,000명	3,001명 이상
추천 가능 인원	8명	9명	10명	11명	12명

유의사항

- ① 각 대학은 시험연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가능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추천 가능 인원의 기준인 입학정원에는 편입학이나 정원의 입학자는 포함되지 않고, 신입학생만 의미함

4 추천 대상자 선발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학의 추천 및 공직임용 취소와 함께 당해 대학은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는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추천 대상자를 선발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추천기준·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추천심사회의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반드시 개최하여 추천심사회의 참석자가 자의적 해석이나 개인 선호에 따라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 ※ **추천 지원자가 학교추천 가능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추천지원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추천 바랍니다.**
- 학교에서는 회의 의결로 자체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는 독자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학과성적 외에도 국내외 경시대회 입상경력,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등 **다양한 평가기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객관적·명시적이어야 하며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모의 PSAT성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발·추천하는 방식 금지
 - 면접평가 비중을 반드시 20% 이상 반영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 충실성, 성실성, 봉사정신 및 공무원으로서 자질 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공계열(행정직군, 과학기술직군)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하며, '공정한 선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에 대비하여 동 회의구성 내역과 추천기준,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의결사항을 기록·관리하기 바랍니다.
- **동일인 추천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추천연도 기준으로 과거에 한 번이라도 추천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 횟수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필기시험을 비롯한 각 시험단계에 응시하지 않아도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원서접수를 한 경우, 추천 횟수에 합산됨

5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1) 인터넷 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학교담당자 및 추천대상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회원가입 필수) 후 원서접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학교별로 계정을 부여하지 않고, 추천업무 담당자 개인이 회원가입 후 학교담당자로 등록하여 추천대상자 입력
 - 학교담당자는 추천대상자가 원서접수를 완료하는지 모니터링하여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원서접수 방법

※ www.gosi.kr > 원서접수 > 응시원서 제출 > 지역인재 선발시험

① 학교 담당자



학교담당자 등록

- ❖ 학교 담당자 정보 입력
 - 추천 가능 학교당 1명의 담당자만 등록 가능
 - 학교 코드(7자리 숫자) 입력



추천대상자 입력

- ❖ 추천대상자 정보 등록
 - 학교 소재 지역 선택
 - **교육통계 상의 학과코드 입력**
 - **필요시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선택**
 - 재추천 여부, 입학정원, 졸업여부 등 입력



추천서류 제출

- ❖ 추천현황표 공문 제출

② 추천대상자 (응시자)



정보 확인·입력

- ❖ 학교 담당자 입력정보 확인
- ❖ **시험 볼 지역 선택**
- ❖ **가산 자격증 선택**
- ❖ 영어 및 한국사 성적 입력
- ❖ 편의 제공 신청



응시수수료 결제

- ❖ 응시수수료 결제 (7,000원)



접수 완료

- ❖ 응시표 출력 (2024. 2. 23.(금) 09:00 이후)

유의사항

- ◆ (학교담당자) 학교 소재 지역 선택 / ◆ (추천대상자) 시험 볼 지역 선택
- ◆ (학교담당자)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선택 / ◆ (추천대상자) 가산 자격증 선택 **(학교담당자의 자격증 입력과 별개의 사항)**

- 학교의 장은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 현황'을 원서접수 기한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가 속한 학교의 장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전자문서(직인날인 필요)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학교담당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학교별 합격자 확인
 - ※ 총장 직접 결재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내부 전결규정 따라 결재한 전자문서를 발송.

<제출서류 목록>

- ①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서
- ② 성적증명서
- ③ 졸업(예정)증명서
- ④ 자격증 사본(해당자)
- ⑤ 대학 자체계열 추천 증빙자료(대학 자체계열로 추천 시 학칙 등의 증빙자료)



IV 시험단계 및 합격자 발표

※ 2024년 선발시험 기준

1 시험 단계

① 필기시험

시험과목	출제유형	문항수	배정시간
5급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인 헌법, PSAT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	객관식	- 헌법 : 25문항 - PSAT : 과목당 40문항	- 헌법 : 25분 - PSAT : 과목당 90분

- 동 시험 관련 필기시험 기출문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시험문제/정답」 - 「문제/정답 안내」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각 과목(PSAT)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지역별 균형합격, 과학기술직군 자격증 요건을 감안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합니다.

②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 자격요건(응시연령, 학과성적,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선발예정직류 관련 학과 계열 등)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면접시험

※ 블라인드 면접, 3명의 면접관의 개별면접 진행(약30분)

-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4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4가지 평정요소

-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④ 윤리·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가산점 적용 및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안내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이 선발예정직류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직류에 응시할 경우, 자격증 1개당 PSAT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대 4%까지 점수를 가산

- 자격증은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가산점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시에만 부여

① 자격종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등급(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에 관계없이 하나의 자격증으로 인정하며, 동일등급이라도 자격종목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증으로 인정함

예시 일반기계 직류

- 예 기계정비기사와 기계정비산업기사를 각각 취득한 경우 가산대상 자격증 1개 (2%)
 - ※ 언어 67.5점, 자료 70점, 상황 65점 → 언어 69.5점, 자료 72점, 상황 67점
- 예 기계정비기사와 기계설계기사를 각각 취득한 경우 가산대상 자격증 : 2개(4%)
 - ※ 언어 67.5점, 자료 70점, 상황 65점 → 언어 71.5점, 자료 74점, 상황 69점

②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계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기능사 이상) 시 해당 직렬(직류)로 추천이 가능함

유의사항 공학, 자연, 의학 계열 학과 전공자가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계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기능사 이상) 시 해당 직류로 추천이 가능하나,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기능사 이상)하더라도 해당 직류로 추천 불가

- 예 자연계열 학과 전공자가 공학계열 추천 학과 직류인 일반기계 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기능사 이상)할 경우 일반기계 직류로 추천 가능
- 예 사회계열 학과 전공자가 공학계열 추천 학과 직류인 일반기계 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기능사 이상)하더라도 일반기계 직류로 추천 불가

2 합격자 결정 시 고려사항

- 지역별 균형합격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면접시험에서 지역별 균형합격의 적용으로 최종합격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인원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9명 이하일 경우 소수점 이하 올림

3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합니다.
- 본인의 필기시험 성적 및 시험 단계별 합격 여부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수습근무 시작 전 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V 자주 물어보는 질문

추천요건

🗣️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직렬(직류) 관련 학과 계열을 전공하여야만 추천토록 하고 있는데, 관련 학과 계열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각 직렬별로 관련 학과 계열을 전공하여야만 추천이 가능하나, 관련 학과 계열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직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유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계열 학과 전공자가 공학계열 추천 학과 직류인 일반기계 직류 관련 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할 경우 일반기계 직류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직류로 추천이 불가능합니다.

추천요건

🗣️ 편입생도 추천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편입학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하거나 전 기간을 이수한 경우,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전공심화과정 전 기간을 이수한 경우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계절학기는 정규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또한, 석차 계산 시 편입생의 경우 편입한 학교 성적만 대상으로 합니다.

추천요건

🗣️ 대학별 입학정원 기준으로 추천인원이 구분되어 있는데 추천인원에 졸업생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학별 추천인원은 재학생과 졸업생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다만 폭넓은 응시기회 부여를 위하여 가급적 졸업예정자 위주로 추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입학정원	1~500명	501~1,000명	1,001~2,000명	2,001~3,000명	3,001명 이상
추천 가능 인원	8명	9명	10명	11명	12명

※ 추천 가능 인원의 기준인 입학정원에는 편입학이나 정원의 입학자는 포함되지 않고, 신입학생만 의미함

추천요건

☎ 선발시험에 합격 후 다음연도 수습시작 전까지 졸업을 못할 경우 수습근무를 유예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학업으로 인한 수습근무 유예는 불가능하며, 졸업예정자는 수습근무를 시작할 때까지 졸업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수습근무 시작 전 또는 기간 중이라도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나, 진학이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천요건

☎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은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가산점이 부여되며, 이후 취득한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천요건

☎ 추천요건 중 성적계산방식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하며,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 평균)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석차 계산 방법 및 유의사항

□ 총 평점평균 = $\Sigma(\text{이수과목의 학점} \times \text{평점}) / \Sigma(\text{이수과목의 학점})$

1학년 1학기 (18학점) 3.0, 1학년 2학기(20학점) 4.0 ...
3학년 1학기 (17학점) 3.2, 3학년 2학기(21학점) 4.1인 경우

총 평점평균 = $\frac{(3.0 \times 18) + (4.0 \times 20) + \dots + (3.2 \times 17) + (4.1 \times 21)}{(18 + 20 + \dots + 17 + 21)}$

- 졸업예정자는 추천 심사일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산출
- 편입생의 경우 편입한 학교 성적만 대상으로 함
- 휴학생의 경우 휴학당시 석차를 기준으로 함. 다만, 전산시스템상 휴학당시 석차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추천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학교별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토록 함
- 국외대학의 교환학생 자격으로 취득한 과목 중 석차산정이 가능한 과목은 반영하되, Pass/Fail 등으로 표기되어 석차산정이 어려운 과목은 총 평점평균 산정 시 제외

선발시험

☎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어떤 과목으로 평가하나요?

인사혁신처 예규인 통합인사지침에 따라 필기시험의 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에서 5급 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홈페이지 '시험문제/정답' 메뉴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선발시험

☎ 서류전형에서도 탈락할 수가 있나요?

서류전형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적격 여부(나이, 학과성적,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만을 판정합니다. 추천 요건 충족 여부만을 검증하는 것으로 별도로 점수가 부여되지는 않으며, 추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불합격 처리됩니다.

합격자결정

☎ 전국 지역인재 7급 합격자 결정시 지역별 균형합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결정합니다.
※ 인원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9명 이하일 경우 소수점 이하 올림
다만 면접시험에서 지역별 균형합격의 적용으로 최종합격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처배치

☎ 부처배치 시 어떠한 것들이 고려되나요?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결원(예상결원을 포함), 인력운영 사정과 수요 및 수습직원의 희망, 필기시험 성적, 전공, 어학성적,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처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 최종합격~부처배치 절차 개시 전까지 취득한 어학점수 및 자격증도 인정

부처배치

부처배치 시 희망한 부처로 배정이 되나요?

수습예정자는 배치인원이 확정된 부처 중 3순위까지 지망이 가능합니다. 이 후에 각 부처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처에 지망한 인원내 한해 매칭작업이 진행됩니다. 다만 3순위까지도 부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기성적 등을 반영하여 잔여 부처에 배정됩니다.

부처배치

근무지는 학교 소재 지역 혹은 거주 지역 근처에서 근무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소재지 지역구분은 합격자 결정 시에만 활용됩니다. 또한, 국가직 공무원은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중앙부처의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전국에 소재하고 있어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발령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근무

수습 근무 도중에 부처를 옮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수습직원은 하나의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수습근무를 하고 해당 기관에 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구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속장관과 협의하여 수습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습근무

수습 근무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2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수습기관에 임명된 날로부터 5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1회)과 10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때의 평가 결과는 1년간 수습기간 종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 중요한 심사기준이 됩니다.

수습근무

수습 근무 도중 학업을 위하여 수습근무 유예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수습근무 시작 전 또는 기간 중이라도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나, 진학이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습근무

수습근무 후 임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수습부처에서는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부처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①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 ② 국가관과 공무원 윤리의식,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 책임감 및 성실성
- ③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 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
- ④ 기타 자격·면허, 건강, 생활태도 등

복무관리

수습근무 도중 몸이 아파 병가를 5개월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수습근무가 연장이 되나요?

수습직원이 질병의 치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워 수습기간의 1/3이상 병가를 허가해야 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6개월의 범위내에서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

기술 자격증 등이 있으면 기술수당이 지급 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수습직원도 지급이 가능한가요?

수습직원은 통합인사지침에 기재된 봉급 및 수당만 지급 가능하므로 기술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등(ex. 출장여비)은 지급 가능합니다.

봉급	수당	실비변상
봉급 (7급 1호봉)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참고1 제도 변경사항('24.1.1.~)

	변경 전	변경 후
1 학교별 추천 인원	6명 ~ 10명	8명 ~ 12명 * 입학정원별 2명씩 증원
2 졸업자 추천제한	졸업 후 1년 이내 * 시험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졸업 후 3년 이내 * 시험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24년 시험 '21년 졸업자부터 가능)

<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 >

입학정원	1~500명	501명 ~1,000명	1,001명 ~2,000명	2,001명~3,000명	3,001명 이상
추천가능 인원	8명	9명	10명	11명	12명

3 전산 직렬 자격증 필수 요건이 폐지,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 인정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



참고2 채용제도 비교(전국 지역인재 7급 vs 7급 공채)

	전국 지역인재 7급	7급 공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
시험대상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대학 졸업(예정)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 졸업자는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	누구나 지원 가능 - 학력, 경력, 연령 제한 없음
선발방식	(행정) 직군으로 선발 (기술) 직류별로 선발	(행정.기술) 직류별로 선발
시험과목	PSAT(공직적격성평가)+헌법 * 영어, 한국사 검증시험 기준점수	(1차) PSAT (2차) 직류별 4과목 * 영어, 한국사 검증시험 기준점수
임용방법	수습(1년) 후 임용여부 결정 * 근무성적평가(2회) 결과 반영	합격 시 임용보장



참고3 직렬별 가산 자격증

□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24년 선발직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외 직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 참조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일반 기계	일반 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공업	공업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전기	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전기	
		기능장 : 전기	
전기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	화공	기술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위험물, 가스 기사: 화학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학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	일반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운수운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장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장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건축사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방재 안전	방재 안전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방송 통신	전송 통신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농업	일반 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환경	일반 환경	<p>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p>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p>
	보건	<p>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p> <p>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p> <p>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p> <p>기능사 : 식품가공</p> <p>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 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p> <p>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p>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전산	전산 개발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산 기기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데이터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 보호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참고4 2024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기출문제

[시 험 과 목]

헌법,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

안 내 사 항

- 해당 자료는 2024. 3. 2.(토)에 실시한 2024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해당 자료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공고, 기출문제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헌 법

-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확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 ② 보통선거라 함은 개인의 납세액이나 소유하는 재산을 선거권의 요건으로 하는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뿐만 아니라 그밖에 사회적 신분·인종·성별·종교·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출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를 확정할 때, 인구편차상하 60%(인구비례 4:1)의 기준을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대통령이 결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③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와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는 동일하다.
 -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④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국회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입법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법안심의를 위한 의사절차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 ②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③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국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 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없이 「국회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②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나, 국회 위원회에는 출석할 수 없다.
 -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없으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있다.
 - ④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언어논리

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조선 성종 때 반포된 『경국대전』에는 지방 수령을 뽑아 내려보낼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규정이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 수령을 뽑을 때는 인사 담당 관청인 이조가 3인의 후보자를 왕에게 올리게 되어 있었다. 왕이 이 가운데 한 명을 택하면 이조는 그 사실을 경주인에게 바로 알려야 했다. 조정과 지방 관아 사이에 오가는 연락을 취급하는 직책인 경주인은 신임 수령이 뽑혔다는 사실을 그 지방 관아에 알리고, 당사자에게도 왕이 그를 수령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고신교지를 보냈다.

이 고신교지를 받은 신임 수령은 무엇보다 먼저 왕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의례인 사은숙배를 거행해야 했다. 이를 위해 모월 모일에 사은숙배를 치르겠다는 내용이 담긴 숙배단자를 만들어 의례 주관처인 통례원에 내야 했다. 통례원은 사은숙배를 하겠다는 날에 왕에게 다른 일정은 없는지, 숙배단자가 제 형식을 갖추었는지 등을 따진 뒤 일자를 확정해 알렸다. 이 통보를 받은 신임 수령은 당일 궁궐에 들어가 상서원이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사은숙배를 해도 좋다는 명이 떨어지면 정전 앞에 나아가 세 번 절하고 왕을 만났다. 이때 왕은 선정을 당부하고, 특별한 지시 사항이 있을 때는 그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신임 수령은 인사 담당 관청인 이조를 찾아가 인사하는 의례인 사조를 거쳐야 했다. 조선시대에는 중앙 관청의 직책에 처음 임명된 문관도 사은숙배를 해야 했는데, 사조는 오직 지방 수령에 임명된 자만 거쳐야 하는 절차였다. 지방 수령에 임명되었음에도 사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조에 불려가 호된 꾸중을 들을 수 있었다.

사은숙배와 사조를 모두 거친 자는 하직숙배를 행한 뒤 임지로 떠났다. 하직숙배란 임지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왕에게 인사하는 의례다. 그런데 이때는 왕이 아니라 승지가 신임 수령을 대신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직숙배 때에는 왕이나 승지 앞에서 지방관이 지켜야 하는 일곱 가지 규정한 ‘수령철사’를 꼭 암송해야 했다. 만일 이를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 부임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파면당하는 불명예를 안을 수 있었다. 이 절차를 무사히 거친 신임 수령이

임지 경내로 들어가면 그 지역 아전과 주민들이 나와 환영회를 여는 것이 관례였다. 신임 수령은 환영 인파와 함께 관아로 가는 도중 그 지방 향교를 찾아 참배해야 했다. 이처럼 조선 왕조는 수령을 뽑아 보내는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그만큼 그 직임을 중시했음을 뜻한다.

- ① 처음으로 문관직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사은숙배와 하직숙배를 모두 거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② 임지에 부임한 신임 수령은 해당 지방의 향교를 방문하여 사은숙배를 올리고 수령철사를 암송해야 했다.
- ③ 지방 수령으로 임명된 사람은 사은숙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의정부를 찾아가 사조라는 절차를 거행해야 했다.
- ④ 신임 수령이 결정되면 통례원이 이조를 대신하여 당사자에게 고신교지를 보내 임명 사실을 알리는 일을 했다.
- ⑤ 정해진 규정대로 사은숙배와 사조를 끝낸 사람이라도 하직숙배 때 수령철사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그 직에서 파면될 수 있었다.

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조선시대가 되기 전에는 삼베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삼베옷은 시원해서 여름에 입기 좋지만 추위는 막지 못한다. 겨울철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는 비단이나 목화로 만든 옷이 필요했는데 비쌌고 구하기도 어려웠다. 가까운 중국도 13세기가 되기 전에는 목화를 기르는 지역이 많지 않았다. 중국에 들어와 있던 목화가 일 년 내내 고온다습한 날씨에서만 자라는 인도산 품종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3세기 후반 원나라에서 좁고 건조한 날씨에도 자랄 수 있는 개량 품종이 나왔다. 이 품종은 고려 말 원에 사신으로 갔던 문익점에 의해 한반도에 들어왔다.

문익점은 공민왕을 폐하고 충선왕의 서자 덕흥군을 새 왕으로 삼겠다는 원의 일방적 통보에 항의하는 임무를 띤 사신단의 일원이었다. 당시 원은 이 사신단을 억류하고 덕흥군 편에 설 것을 요구했다. 문익점의 후손들이 펴낸 『삼우당실기』라는 책에 따르면 문익점은 원의 회유를 뿌리쳤으며 그 별로 오늘날의 운남성에 유배되었다고 한다. 이 책에는 문익점이 유배에서 풀려나 귀국할 때

그곳에 있던 목화 씨앗을 붓두껍에 숨겨 들여왔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고려사』에는 문익점이 귀국 직후 관직에서 파직된 것으로 적혀 있다. 사실 공민왕이 문익점을 내친 것은 그가 원의 요구를 수용해 덕흥군 편에 섰기 때문이다. 그는 운남성에 유배된 적이 없으며 원의 수도인 대도에 머물다가 귀국했다. 문익점이 고려로 돌아올 때 좁고 건조한 날씨에서도 자랄 수 있게 개량된 목화 씨앗을 가져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 씨앗은 대도 근처 농촌에서 구한 것이었다.

문익점은 벼슬을 잃은 후 낙향하여 원에서 가져온 목화 씨앗을 자기 밭에 심었다. 그런데 정작 문익점은 목화를 제대로 기르는 데 실패했다. 목화 재배에 성공한 사람은 그의 장인 정천익이었다. 그는 예전에 목화를 본 적도 없고 재배법도 몰랐지만, 문익점이 가져온 목화 씨앗 몇 개를 나누어 받아 재배한 끝에 결실을 거두는 데 성공했다. 그는 원 출신의 흥원이라는 승려로부터 목화에서 실을 뽑는 기술을 배워 퍼뜨리기도 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문익점만 주목하지만, 목화 재배법과 실 뽑는 기술을 퍼뜨린 정천익도 잊지 말아야 할 인물임에 틀림없다.

- ① 정천익이 심어 재배에 성공한 목화 씨앗은 좁고 건조한 날씨에도 자랄 수 있는 개량 품종이었다.
- ② 원의 후원에 힘입어 고려 국왕이 된 덕흥군은 즉위 직후 문익점 등의 대신들을 파직하였다.
- ③ 흥원이라는 승려는 원에서 개량 목화 씨앗을 들여와 고려에 이를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 ④ 문익점은 운남성에 유배되어 있을 때 직접 목화를 재배한 뒤 그로부터 실을 뽑았다.
- ⑤ 공민왕이 보급한 목화 씨앗은 당시의 고려 상인들이 인도에서 수입한 것이다.

6.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의 집단을 말한다. 인간 몸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의 집단을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하는 미생물은 입 안과 피부 표면, 질 내부, 위장관 등 다양한 곳에 분포되어 있고, 그 수는 인간 몸의 세포 수보다 10배 정도

많다고 알려져 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다른 부위의 마이크로바이옴보다 미생물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양성도 크다. 거주환경과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달라진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장내 식이 섬유를 짧은 사슬 지방산으로 바꾸어 인체가 흡수하기 용이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 또한 병원균의 침투를 막는 방어막을 형성하고 면역 물질로 알려진 사이토카인을 생성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적절한 상태로 만든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하는 미생물의 수와 다양성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이러한 역할이 적절히 수행된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하는 미생물의 수와 다양성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휴면 상태로 있던 유해균이 깨어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 비만이나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도 나타날 수 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내 염증성 질병의 치료에 이용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은 미생물군 이식이다. 미생물군 이식은 건강한 사람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키운 배양체를 장내 염증성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관장 등의 방법으로 이식하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 배양체를 장내 염증성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이식하면, 장내 미생물의 수와 다양성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되어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

- ① 인체에는 장 속보다 미생물이 서식하기에 더 적합한 곳이 있다.
- ② 몸에 있는 미생물의 수가 몸의 세포 수보다 줄어들면 면역력이 강화된다.
- ③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하는 미생물의 수가 많을수록 장내 건강에 유익하다.
- ④ 적정 수준의 미생물 수와 다양성을 갖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낸다.
- ⑤ 건강한 사람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배양체를 장내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이식해도, 환자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에는 변화가 없다.

자료해석

1. 다음 <표>는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갑'지역 택배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갑'지역 택배서비스 월평균 이용건수 (단위: 건)

구분	코로나19 발생 전	코로나19 발생 후
전체	6.2	9.7
성별	남성	6.8
	여성	5.7
연령대	10대 이하	4.2
	20대	5.4
	30대	7.2
	40대	7.4
	50대	6.2
	60대	6.1
거주형태	아파트	6.3
	주택	6.3
	오피스텔	5.7
	기타	4.4

<보고서>

'갑'지역 택배서비스 이용자의 코로나19 발생 전 월평균 이용건수는 6.2건이었으나 발생 후에는 9.7건으로 50% 이상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발생 후 택배서비스 월평균 이용건수 증가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발생 후 택배서비스 월평균 이용건수 증가율은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70대 이상이 다음으로 높았다.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 거주자의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발생 후 택배서비스 월평균 이용건수 증가율이 약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파트 거주자가

다음으로 높았다. 유통채널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온라인구매 비율이 6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마트배송, 홈쇼핑,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후 온라인구매 비율은 발생 전에 비해 3.3%p 증가하였다. 수령방법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대면 수령 비율과 비대면 수령 비율이 각각 50.2%, 49.8%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대면 수령 비율이 19.4%로 감소하였고, 비대면 수령 비율은 80.6%로 증가하였다.

<보기>

ㄱ. '갑'지역 택배서비스 이용건수의 유통채널별 비율 (단위: %)

구분	유통채널	온라인 구매	홈쇼핑	마트 배송	기타	합계
구분	코로나19 발생 전	61.0	12.9	15.1	11.0	100.0
	코로나19 발생 후	64.3	12.5	16.0	7.2	100.0

ㄴ. '갑'지역 택배서비스 이용건수의 수령방법별 비율 (단위: %)

구분	수령방법	대면	비대면	합계
구분	코로나19 발생 전	50.2	49.8	100.0
	코로나19 발생 후	19.4	80.6	100.0

ㄷ. '갑'지역 택배서비스 이용자의 거주지별 월평균 이용건수 (단위: 건)

구분	거주지	도시	농촌	기타
구분	코로나19 발생 전	6.7	5.8	5.9
	코로나19 발생 후	11.2	8.4	8.5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 다음 <표>는 2023년 A~D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인구 관련 자료이다. <표>와 <조건>을 근거로 A~D 중 '갑'~'정'에 해당하는 국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1> 2023년 A~D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 톤 CO₂eq.)

구분	국가	A	B	C	D
교통		9.7	5.0	4.0	2.5
주거용빌딩		140	4.5	()	2.0
상업용빌딩		17.0	4.5	3.5	2.8
기타		11.0	50.0	6.3	3.5
총배출량	()	64.0	17.3	()	

<표 2> 2023년 A~D국의 인구 (단위: 백만 명)

국가	A	B	C	D
인구	9.7	2.9	2.4	1.5

*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톤 CO₂eq./명) = $\frac{\text{온실가스 총배출량}}{\text{인구}}$

<조건>

- '갑'국은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50백만톤 CO₂eq. 이상이고,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가장 적다.
- '을'국과 '병'국 간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차이는 1.0톤 CO₂eq./명 이하이다.
-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주거용 빌딩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은 '병'국이 '정'국보다 높다.
- 주거용 빌딩과 상업용 빌딩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은 '을'국이 가장 적다.

	A	B	C	D
① 갑		병	정	을
② 갑		정	을	병
③ 갑		정	병	을
④ 정		갑	을	병
⑤ 정		갑	병	을

4. 다음 <표>는 소음 환경에 따른 A~E 집단의 주의력 및 공간지각력 점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A~E 중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을 고르면?

<표> 소음 환경에 따른 주의력 및 공간지각력 점수 (단위: 점)

구분	저소음 환경				고소음 환경			
	주의력		공간지각력		주의력		공간지각력	
집단	성별		성별		성별		성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A	7.2	6.9	8.0	6.6	3.6	3.3	4.1	3.0
B	6.8	7.3	6.5	8.1	2.5	3.0	3.1	3.6
C	8.3	7.9	7.8	7.6	4.4	4.1	3.5	3.4
D	6.5	6.8	6.7	6.5	3.2	3.5	3.2	3.3
E	7.7	8.0	7.9	7.9	3.7	4.0	3.9	3.6

<조건>

- 저소음 환경과 고소음 환경에서의 주의력 점수 차이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다.
- 고소음 환경에서, 주의력 점수가 더 높은 성별이 공간지각력 점수도 더 높다.
- 남성과 여성 모두 저소음 환경에서의 주의력 점수가 고소음 환경에서의 주의력 점수의 2배 이상이다.
- 저소음 환경에서, 남성은 공간지각력 점수가 주의력 점수보다 높고 여성은 주의력 점수가 공간지각력 점수보다 높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상황판단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조성, 제공 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제공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 실태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포상 대상은 공무원에 한한다.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2.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행사·문화공연 개최
4. 시장·상점가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5. 문화관광형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교육

제00조(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① 시·도지사는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00조 제2항에 따라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2.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00조 제2항의 육성계획이 추진되지 아니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개별 상인의 신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시·도지사가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③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해제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지만, 기념품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는 지원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제00조 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00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급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관리한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제00조 제3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2. 헌혈의 장려
3.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제00조(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①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2.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채혈부작용이라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또는 소송 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① 헌혈증서를 제출함으로써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헌혈자에 한한다.

② 혈액원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대하여 헌혈환급적립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으로부터 적립받은 헌혈환급적립금으로 헌혈환급예치금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특정수혈부작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혈액원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의료기관이 헌혈증서를 제출한 헌혈자에게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